

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
중개정조례(안)심사보고서

'93. 7. 8.
총무재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 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3. 7. 2. 마포구청장 제출
 - 나. 회부일자 : '93. 7. 5
 - 다. 상정일자 : 제17회임시회 제2차위원회('93. 7. 8.) 상정, 심사, 의결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총무과장 김석봉)
 - 가. 제안이유
서울특별시마포구 망원제1동사무소 및 염리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함.
 - 나. 주요골자
 - 동사무소 소재지 변경
마포구 망원동 338-61→마포구 망원동 403-22
마포구 염리동 83-3→마포구 염리동 147-14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김건재)
동 조례(안)은 지방자치법 제6조에 근거한 개정으로 특이사항은 없음.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5. 토론요지 : 없음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8. 기타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
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21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3년 7월 2일
제출자 : 마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서울특별시 마포구 망원제1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하여 동사무소 소재지를 변경코자 함.
2. 개정 주요골자
동사무소 소재지 변경
마포구 망원동 338-61을 마포구 망원동 403-22로 변경
3. 개정근거
가. 지방자치법 제6조
나. 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 제4조
4. 개정조례(안) : 별첨
5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
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마포구동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<별표 1> 동사무소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중 망원제1동의 동사무소 소재지란중 "망원동 338-61"을 "망원동 403-22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6월 14일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				개 정(안)				
<별표 1> 동사무소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					<별표 1> 동사무소 설치, 명칭과 소재지 관할구역				
구분	동사무소 명 칭	동사무소 소 재 지	법정동관할		구분	동사무소 명 칭	동사무소 소 재 지	법정동관할	
			전지역 관 할	일부지 역관할				전지역 관 할	일부지 역관할
마포구			(생 략)		마포구			(현행과 같음)	
	망원계 1동	망원동 338-61		(생략)		망원계 1동	망원동 338-61		(현행과 같음)
			(생 략)					(현행과 같음)	